#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05 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김동아

김성환 · 문정복 · 김문수

복기왕 · 김현정 · 전재수

안도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.

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, 반입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의 최대 10%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.

그런데 최대 10%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특히, 현행 10%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,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 리가 높습니다.

이에,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하고자 합니다.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

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##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(加算金)을 징수할 수 있다"를 "폐기물처리수수료 외에 그수수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가산금(加算金)으로 징수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조(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) 제8조(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)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 한다. 이하 같다) 외의 지역에 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 기물처리수수료 외에 그 수수 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자치단체의 조례(「지방자치 금액을 따로 가산금(加算金)으 로 징수한다. 법」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 산금(加算金)을 징수할 수 있 다.